

생활교육 혁신의 의의와 중심 과제

배이상현(조례제정위자문위원, 광주무진중)

1. 생활교육 혁신 왜 절박한 과제인가?

- 가. 90년대 후반 이후 언론에서 조명되는 ‘학교붕괴’의 실체는 교육공학적 문제 이상으로 학교사회 질서의 붕괴이다.
- 나. 지식의 아성으로서 학교는 없다. 졸업과 취업을 통해서 보증해주는 사회적 성취에 대한 약속도 없다. 학교의 권위는 교육 본연의 휴머니즘과 성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다. 권위와 강제가 사라진 학교에서 학생을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시장 주체,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한 냉소적 개체로 성장시키는 것에는 학교교육의 책임이 크다. 학교는 인권과 민주시민교육의 온상이어야 한다.
- 라. 사회제도로써 학교의 통치방식은 수직적 관료 질서에서 수평적 참여계약의 사회로 변해야 한다. -- 생활지도방식의 괴리로 인한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
- 마. 생활교육의 혁신과 학교사회의 구체적 쇄신이 없다면 학생인권조례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교육계의 책임과 사회적 부담은 심각할 것이다.
- 바. 교사의 교육 전문성은 대화와 소통, 상호존중과 참여의 인권적 환경에서 가능하다. 지식교육과 생활교육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의 수단이 되는 명제도 아니다.

2. 학교 교육환경의 변화와 관련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예:

- ㉠ 교육감의 학생인권증진계획에 따른(4년마다 실시)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2년 1회 실시
- ㉡ 강제 보충자율학습 폐지,
방과후학교 및 보충수업 등에 관한 학생의견 수렴 학생선택권 보장
- ㉢ 정규 교육과정 외 교내·외 행사에 대한 학생 참석 강요 금지
- ㉣ 체벌금지, 두발 자율화 및 자유화
- ㉤ 휴대폰 소지 가능 --수업시간 휴대폰 사용 금지
-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 양심에 반하는 반성과 서약 금지
- ㉧ 교내 학생언론활동 활성화
- ㉨ 일부사안에 대해 학운위 학생대표 참석
-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및 학교당국에 대한 의견제출권 확대
- ㉪ 상담과 돌봄의 체계 지원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책임 강화
- ㉫ 학생의 휴식과 문화 활동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책임강화
- ㉬ 학생안전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책임 강화
- ㉭ 5개의 학생의회 현실화 및 집행부 구성, 예산 확보
- ㉮ 학생,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학기당 2시간 이상),
보호자 간담회 연1회
- ㉯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인권실태 현장방문 조사활동
- ㉰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3. 학생인권조례가 요구하는 학교사회의 총체적 변화

‘조례’가 촉구하는 학교의 교육관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학생은 내일 행복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오늘 행복해야 한다.
- ㉲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은 존중되고 학교는 인권과 문화, 복지,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 학생은 학습의 주체이며, 자기주도성이 없는 학습은 성공할 수 없다.
- ㉴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핑계 삼아 반인권적인 교육방식을 쓰는 것은 불가하다.

- ㉔ 학생은 결과로 평가되기보다는 과정으로서 존중해야 한다.
- ㉕ 학생은 집단의 한 구성요소가 아니며, 한 개인으로서 소중한 존재이고, 한 개인의 행복이 교육의 목표이다.
- ㉖ 학생은 참여와 자치를 통하여 발전하며, 책임감을 획득한다.
- ㉗ 사랑만으로는 교육적이지 않다. 사랑과 대화의 휴머니즘을 갖추어야 교육적이다.
- ㉘ 일방적 지시와 훈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존중과 소통, 참여와 계약을 통해 학교는 신뢰와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 ㉙ ‘생활지도’의 문화에서 ‘생활교육’의 문화로 교사의 존재방식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 생활지도 VS 생활교육

- 1) 지도라는 용어가 갖는 감시·통제·일방적 느낌을 벗어나, 대화-상담-소통을 통한 교사와 학생의 실질적 만남을 학교문화의 필수 요건으로 성취하고자 함.
- 2)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고,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천을 통해 학생을 성장시키는 교사의 전문성을 공교육의 기본 가치로 존중하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생활교육’을 조명하고 학교교육에서 그 비중을 확대하고자 한다. ‘생활교육’의 차원에 이르러야 학교와 인권은 상호불가분의 관계가 되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상생의 관계가 된다.
- 3) 지도에서 교육으로의 전환은 교사 일방의 주도가 아닌 학생-학부모-교사, 교육 3주체의 주체성과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이다.

4. 학생인권조례 관련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과제

- ① 인권의 존중을 규율의 부재라고 생각할 가능성
 - * 학생 → 규정에 대한 교육 및 규정 위반시 처리절차의 확인
규칙 형성 과정의 능동적 참여 보장, 권리의 존중과 의무 및 책임공유
 - * 교사 → 교육적 지도라는 이름으로 자의적이고 사적인 지도 및 인격적 지배를 관철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규정과 절차(매뉴얼)에 따른 공적인 심판관, 질서유지자로서 역할을 집행한다. 질서유지자(치안)와 교육적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 ②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이해, 반비례적으로 바라보는 사고
- * 권위는 학생으로부터 / 권리는 교육행정관청과 학부모로부터
 - * 학생인권과 교육권은 상호의존, 학습권과 수업권도 마찬가지
 - * (과거의 교권) 군림, 통제, 개별적 장악력 / 교사의 희생
 - 교육행정, 시스템의 확충 / 교사의 합리적 지도력

4-1. 인권과 학교교육의 관계는?

- 가. 학교교육은 인권의 체험장이며, 인권을 스스로 성취하는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 나. 교육은 인권적일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
- 다. 교사의 전문성은 학생인권의 신장을 통하여 더욱 존중된다.
- 라. 무서운 교사 한 개인이 아닌, 합리적 학교 시스템과 학생의 참여를 존중하는 교육제도의 실현을 통해 학교의 권위, 교육의 권위는 가능하다.
- 마. 인권은 열악한 교사의 근무여건, 학생지도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5.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위한 생활교육 혁신의 중심 과제 (검토사항)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지표
;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

< 생활교육 혁신의 기본 방향 >

- 비전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으로 정의로운 민주시민 양성
- 목표
: 생활교육의 혁신과 참여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문화 선진화

□ 중심 내용

1.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공동체
2.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3. 민주적 학교 공동체

□ 추진 방도

1. 인권 침해적 학교문화의 혁신과 관련 규정 철폐
2. 법치와 자치의 학교사회 시스템 선진화
3. 교사의 교권보장과 협력적 생활교육체제 완비

□ 세부 내용

1.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공동체

- * 교육주체의 인권 의식과 역량 강화
- * 계약사회의 바탕으로서 학교생활규정의 인권 친화적 개정
- * 인권교육과 생활규정 공유, 공감의 교육 틀 확보
- * 생활교육지향 교사협력시스템과 업무구성
 - @ 생활교육부로 기존의 '학생부'의 역할 구체화
 - @ 학년단위 협력적 생활교육체제 구성
 - @ 교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재조명
- * 학생접촉에서 교사의 인권적 언행과 공적 기준 개발 제시
- * 학교단위 및 지역단위의 학생 인권 구제 절차
- * 교사의 교권보호 방안

2.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 * 차별 없는 학교
- * 교사의 교육활동에서 치안유지기능과 교육상담의 분리
- * 갈등 조절의 절차 제시
- * 징계과정의 선도프로그램 제시와 지원(수련프로그램 활성화)
- * 전문 상담가의 확대 배치와 교사의 상담역량 강화 지원

- * 평화로운 학급문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시 및 지원
---배려와 존중, 우정과 협력의 관계맺기
- * 성찰교실 활성화 검토
- * 학생자치법정 및 또래상담시스템의 활성화 지원
- * 부적응학생 대안교육시스템 확대와 지원

3. 민주적 학교 공동체

- * 학생참여의 구조와 내용 제시
- * 학급회의 및 대의원회의 정상화
- * 생활공간별 협력적 자치활동 활성화
- * 학생회의 권한과 역할 조명
- * 학생회 공간 확보 및 예산 자치권 검토
- * 학생언론의 활성화와 지원
- * 학생동아리의 활성화와 지원
- *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와 학교장 면담 정례화
- * 입학식, 졸업식, 축제, 체육대회 등의 학생참여자치활동 활성화
- * 학교 울타리를 넘는 학생자치활동의 지역화 (학생의회 등과 결합)
- * 지역의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학생자치활동 서포터즈 구성 및 지원
- *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탄력적용 검토 제시
- * 자치활동 총괄 지원, 기획하는 담당교사의 역할 지원 및 연수 및 보상
- * 민주적 학교시스템의 점진적 확대(학부모회, 교직원회 등과 함께)

6. 생활교육과 학교문화 혁신의 핵심 방향(과제)

- 가. 인권 친화적으로 학교 규칙 개정하고,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
- 나. 학부모와 학생, 교사 각자가 학교생활규정을 합의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것(교육과정화--학교행사 및 학급행사, 각 교과 및 창체 교육과정에 대한 유기적 설계)
- 다. 생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등을 학교의 우선적인 존재 이유로 삼는 교사의 합의

- 라. 교사가 학생을 만남에 있어 사사롭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감정 대립상태로 소통되어서도 안 된다. (이건 내 맘이야, 억울하면 선생 되라!)
- 마. 학교질서 유지를 위한 교사의 역할과 교육상담, 교육활동의 지원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분리, 분별하는 문제 (치안유지자로서 교사의 역할은 사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공적 매뉴얼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교육적 상담과 지원자로서 역할은 상호 존중을 통해 진행하며,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 바. 감정적 갈등과 대립상태로 진전되지 않는 공적 매뉴얼과 다수 교사의 공적 협력체계를 개발하는 문제 --- 보편적 법치의 내실화
- 사.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 명백히 타인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규칙을 구성한다. (수업시간 수면, 상호 인사, 지각지도 등의 문제는 교육적 상담의 문제이지 타인의 인권과 학습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다)
- 아. 기초질서위반과 지시불응에 대한 생활교육의 절차를 분명히 하고, 징계 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선도프로그램과 그 내용을 지원하는 것
- 자. 학생이 학교사회 및 학교운영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접근방식의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학교사회의 주인의식과 학생사회의 청소년문화를 꽃피우는 과제
- 차.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공동체적 책무성과 민주시민의 정치활동을 배울 수 있게 하는 학교시스템을 형성하는 것 - 관련 교사의 자치활동의 지원역량을 키우고, 지원내용을 확보하는 것
- 카. 학생의 기본권 신장과 참여자치활동을 중심으로 학교교육력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방식의 개발
- 타. 학생의 참여자치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지원역량을 개발하고, 교육청은 학생의 참여자치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역량을 다양하게 결집시키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행정적 전문성을 키운다.
- 파. 상담과 치료 등에 교육청의 효과적 지원과 네트워킹

하.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 학생자치활동 간부연수 프로그램 개발

7. 마무리하며

학생인권조례는 시민이 발의할 수도 있고, 의회가 발의할 수도 있다. 누가 발의하고 약간의 가감이 이루어지더라도 학교의 변화는 인권적 원리에 의해 구성될 것이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미리 ‘체벌금지’를 지침으로 발표하여 다양한 생활교육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것처럼 광주광역시도 조례와 상관없이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인권친화적 생활교육의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교육청이 진정 감당해야 할 몫은 ‘인권친화적 생활교육 혁신방안’의 제시에 있다 할 것이다. 인권/평화/민주로 큰 흐름을 제시하였고, 학생의 위치에서 본다면 인권/법치/자치의 형태로 학교의 변화에 참여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환경을 설계하고자 한다. 2011년은 다양한 제안과 의견수렴, 토론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교직사회의 모든 주체들과 학생, 학부모의 폭넓은 소통의 길이 있기를 희망한다.

조례는 한 걸음을 내딛고, 다시 시간이 흘러 또 한 걸음을 옮길지라도, 학교의 변화는 일정한 원리와 기준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학교의 변화를 구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결과는 당연히 미흡하고 이런저런 시행착오와 과도기적 혼란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누는 교육주체들의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이 인권친화적 생활교육의 새 학교를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힘일 것이다. ☒